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경 우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조례 제4조에는 시민에게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공정한 이용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제10조 가목에는 12세 이하, 65세 이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에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중 65세 이상 이용자

비율은 채 10%가 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이용자 수는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그 수는 더욱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규정과 혜택은 있으나 이용률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이용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의 부진한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와 이용활성화 방안의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